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7월 5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년 7월 5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7월 11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7 - 20호

2. 개정이유

현행 군민상 추천시 부문별 시상을 하는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어 이를 추천부문 구별없이 통합하고, 거주지 제한없이 거창군의 발전과 명예를 빛나게 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자격을 줌으로써 군민상 수상자의 폭을 넓히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시상대상(안 제3조)

- 효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 기타 제반분야에서 거창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자에게 시상
- 군민상은 대상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특별상 시상

나. 수상자의 자격(안 제4조)

- 군민상 대상 후보자는 본적지를 거창군에 두고 있거나 시상 예정일 현재 10년 이상 거창군에 거주한 자

- 군민상 특별상 수상 후보자는 제1항의 자격이 없거나 사망한 자다. 후보자의 추천시 불필요한 서류 생략: 주민등록초본(안 제6조제2항)
- 라. 위원장의 공정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장치 마련(안 제 11조제2항)
 - 위원장이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4.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1982. 10. 18 최초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43명이 수상하였으며 9차에 걸쳐 개정되어 오면서 매년 1인 시상을 원칙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조문의 기재사항이 부문별 시상을 하는 것으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면서 군민상을 본적지나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수상자의 폭을 넓히고자 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먼저, 제3조(시상대상)의 개정사유는 종전 군민상 추천시 6개(효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부문별로 추천토록 되어 있으므로 인해 특정부문의 공적만으로 수상할 수 있는 것으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안처럼 “효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 그 밖에 제반분야에서 거창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시상토록 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제4조(수상자의 자격)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본적지를 거창군에 두고 있거나 10년이상 거창군에 두고 있는 자에게 자격을 한정하였으나 “대상”후보자와 “특별상” 후보자의 자격을 구분운영하려는 것은 거창군의 발전과 명예를 빛나게 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자격을 줌으로써 군민상 수상자의 폭을 넓히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 제6조(후보자의 추천) 제2항의 후보자의 추천시 “주민등록초본 1통제출”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및 「전자정부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거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하려는 것이며,
 - 제11조(회의) 제2항을 신설한 것은 수상자 선정시 위원장의 영향력을 사전 차단하여 공정한 심사를 위한 의지를 나타 낸 것으로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됨.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